보건복지부	보 도 자 료 4월 19일(금) 조간(4.18.12:00 이후 보도)		
배 포 일	2019. 4. 18. / (총 15매)	담당부서	아동권리과
과 장	변 효 순	전 화	044-202-3430
담 당 자	권 고 운		044-202-3446

보호종료아동 2,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(4.19)한다!

- 올해 말까지 월 30만 원 지급, 자립수당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**보호종료아동* 2,831명에게 자립수당**을 4월 19일(금)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.

*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
○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에서 **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**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.

○ 지급 대상은 **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** 중 **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**이다.

○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**월 30만 원이 지급**된다.

□ 지난달 **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**을 받기 시작했으며,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**대상자 4,634명* 중 3,364명(72.6%)**이 신청하였다.

* 행복e음 시스템으로 신청자격(보호종료일, 보호기간)에 맞춰 추출한 대상자 수

○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**약 2,831명(84.2%)**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.

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| 다양한 복지서비스 복지로 복지로에서 한 번에 | 평 생 친 구

○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,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**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.**

○ 올해 연말까지 **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.**

< 자립수당 신청률 및 지급률 >

대상자	신청자	조사·결정			
		계	지급결정	미지급 결정	조사진행
4,634	3,364 (72.6%)	3,364 (100%)	2,831 (84.2%)	95 (2.8%)	438 (13%)

□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**4월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**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**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.**

○ 자립수당은 **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** 예정으로,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**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**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.

□ **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**은 "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**학업·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** 마련하는데 **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**"라고 전했다.

○ 또한 "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**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**해 나갈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○ 아울러 "자립수당은 **이후에도 신청이 가능**하므로 **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** 달라"고 당부했다.

□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**보건복지상담센터**(국번 없이 129) 또는 관할 **읍·면·동 주민센터**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.

○ 제도 안내, 신청 방법, 신청 서류 등 **자세한 정보는** 아동자립지원단 **누리집**(http://jarip.or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< 참고 > 1. 자립수당 개요
2. 자립수당 관련 주요 질의답변
3. 자립수당 안내문, 홍보 포스터, 홍보 책자

참고1 자립수당 개요

□ 필요성

○ 보호종료아동*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**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**** **경험**

* '18년 기준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2,606명

** 보호종결 후 **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**(31.1%), **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**(41.1%) ('16년,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)

○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**국가책임성 확보**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**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**

□ 지원 내용

○ (지급대상) '17년 5월 이후 **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**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

-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(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)된 아동

- **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**를 받은 아동

○ (지급금액) **매월 20일**,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**30만 원 입금**

○ (사례관리)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**사례관리 연계**

○ (지급기간) '19.4월~12월(시범사업)

○ (소요예산) '19년 약 133억 원(국비 98.5억 원 / 지방비 34.3억 원)

□ 기대 효과

○ 보호종료아동의 **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**

참고2 자립수당 관련 주요 질의답변

Q1. 자립수당이 무엇인가요?

A1. **2019년 4월**부터 **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**에게 **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**하는 제도입니다.

Q2. 자립수당의 지급 목적은 무엇인가요?

A2.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**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향상**을 통해 **성공적 자립을 지원**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.

Q3. 자립수당 대상은 누구인가요?

A3. 자립수당은 **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**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- **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**
  - * 아동복지법 상 아동보호치료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
  - *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, 보호시작일이 속한 '월' 기준으로 산정함
- **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**

✓ **동일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**
예시)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→ 2년 1개월 인정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Q4. 자립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
A4. 자립수당은 **2019년 3월 18일**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5. '17년 5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A5. 자립수당은 당초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. 자립수당 첫 지급인 **'19년 4월에 보호종료 2년이 되는 '17년 5월 보호종료된 아동**은 당초 기준대로라면 '19년 4월분 자립수당만 받을 수 있지만, ① **시범사업이라는 점** ② **'20년 본 사업시 사업대상이 확대되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** 등을 고려하여 **'19년 12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**하게 되었습니다.

Q6. '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

A6. 2017년 5월 1일 이후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 처리된 아동을 말합니다. **2019년 12월까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**은 **2017년 5월 1일~2019년 12월 31일** 보호종료된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.

✓ 예시) **4월분 자립수당은 2017년 5월 1일~2019년 4월 30일** 보호종료된 아동이 받을 수 있으며, **5월분 자립수당은 2017년 5월 1일 ~2019년 5월 31일** 보호종료된 아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Q7. 자립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A7. 자립수당은 **2019년 시범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지급**합니다. **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**으로, 기존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대상에 해당될 경우 **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**됩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Q8.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

A8. **보호종료일을 기준**으로, 적어도 **과거 2년 이상은 보호종료 처리 없이 연속해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**입니다.

다만, **과거 2년 이상을 계산할 때에는 보호종료일이 속한 '월'을 기준으로 판단**합니다.

'18세 이후 **A년 B월에 보호종료된 아동**이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**(A-2)년 (B+1)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된 아동**이어야 합니다.

보호종료일이 속한 '월'로부터 과거 2년 기준	
A년 B월	**(A-2)년 (B+1)월**
2019년 12월	2018년 1월
2019년 11월	2017년 12월
…	…
2017년 6월	2015년 7월
2017년 5월	2015년 6월

<사례>

① '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' 에 해당되는 경우

② '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'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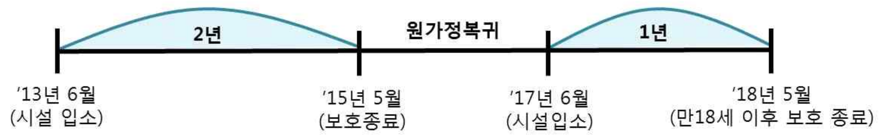

→ 보호종료일('18년 5월)로부터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기간은 1년이므로,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

Q9. 자립수당은 누가,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A9. 자립수당은 **본인 또는 대리인**이 **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**에 신청합니다.

* 대리인 :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·배우자), 관계 공무원, 시설장(시설 종사자 포함), 위탁부모, 자립지원전담요원, 보육사

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
* 해외유학(재학증명서), 군입대(군입영사실확인서), 질병(병원입원확인서) 등

✓ **보호종료 예정 아동**의 경우, **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**이 가능
- **아동양육시설·공동생활가정** 보호종료 예정 아동
  : **시설종사자**가 **시설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**에 신청
- **가정위탁** 보호종료 예정 아동
  : **본인 또는 대리인**이 **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**에 신청

✓ **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**

<신청방법>

구분		보호종료 예정 아동		보호종료아동
		아동양육시설·공동생활가정	가정위탁	
방문 신청	신청권자	시설종사자	본인 또는 대리인	본인 또는 대리인
	신청접수	시설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	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	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	신청기간	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		상시 신청 가능
우편·팩스 신청		해외 인턴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(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)		

Q10.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?

A10. **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, 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중 1종)을 제출해야 합니다.

✓ **단,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**

-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**통장 사본 1부**
- 대리 신청시 **「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」 및 대리인 신분증, 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**
  *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,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,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
-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**보호종료 확인서**
  *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, 보호종료아동은 **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**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11. 어떤 경우에 자립수당 수급권 상실 · 정지되나요?

A11. 자립수당은 **사망, 국적상실, 국외 이주, 난민인정 취소, 난민인정 결정 철회, 시설 재입소 시 수급권이 상실**됩니다.
또한, **교정시설 입소(금고 이상의 형), 행방불명, 실종·가출,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,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수급권이 정지**됩니다.

* 국외 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: 인턴, 해외 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

Q12. 군 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
A12. 자립수당은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.

Q13.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?

A13.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지만, **해외인턴, 해외유학,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**
다만, 이 경우 **공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**에만 인정됩니다.

Q14.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A14. 자립수당은 반드시 **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**으로 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.(적금, 청약통장 등 **입출금이 제한되는 통장 불가**)
다만, 보호종료아동이 **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,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이 가능**합니다.

*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는 통장입니다.

✓ 자립수당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, **신청서 제출 후 대상자로 확정**되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**「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」**를 발급받아 **시중 은행에 가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**한 후 **계좌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**하면 됩니다.
이 경우 **최초 「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」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**하여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.

Q15.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?

A15. 자립수당은 **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**되므로,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Q16. 거짓 ·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립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A16. **허위 신고** 또는 **수급권 상실·정지된 보호종료 아동**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, **행정 착오·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**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**자립수당이 환수 처리됩니다.**

Q17. 보호종료 후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소급지급이 되나요?

A17. 자립수당은 **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**됩니다. 다만, **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**(60일이 되는 날이 토·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)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, **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**됩니다.

✓ **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**
개별 읍·면·동 주민센터

✓ **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(http://jarip.or.kr)에서 확인하세요!**

참고3 자립수당 안내문, 포스터, 홍보 책자

□ 안내문

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
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**매월 30만원**을 지급하여 **경제적 부담을 완화**하고 **성공적 자립에 기여**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대상자

- **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**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**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**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
  - **만18세 이후**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

동일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.

예시 A 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→ A아동양육시설(6개월) + B공동생활가정(1년 7개월) = 2년 1개월 인정
*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보호치료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

- 단, 보호종료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(「난민법」 상 난민인정자 포함)해야 하고,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.

지급금액

- 보호종료아동 1명당 **매월 30만원**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.
- 지급일은 **매월 20일**(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)입니다.

신청기간

- **2019년 3월 18일**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

❶ **방문신청**
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.

단!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,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아동양육시설 ·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: **시설종사자**가 **시설 관할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**에 신청
-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**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**에 신청
*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.

❷ **우편 또는 팩스 신청**
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* 해외유학(재학증명서), 군입대(군입영사실확인서), 질병(병원입원확인서) 등

신청서류

❶ **필수 제출서류**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중 1종

❷ **추가 제출서류**
-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
- 대리신청 시 「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」 및 대리인 신분증
-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'보호종료 확인서' 요청 가능

※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,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

☐ 포스터

보건복지부
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
보건복지 상담센터 129
보호종료아동에게
매월 30만원 지급!
자립수당
지금 신청하세요!
대 상
•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❶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
❷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지급금액
•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
• 자립수당 지급일 : 매월 20일
* 토·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
신청기간
•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
신청서류
❶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
❷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)
* 단,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,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,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'보호종료 확인서' 제출 요청 가능
신청방법
•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
사전신청
▸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,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
(단,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대리 신청)
※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(http://jarip.or.kr) 참조

☐ 홍보 책자 (겉지)

Q&A
자립수당
Q 언제까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A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서 12월까지 지급합니다. 본 사업 시행 시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됩니다.
Q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?
A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,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주거지원
Q 보호종료 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 보호종료 지역과 관계없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.
* 수행기관 명단은 3월 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
Q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무엇인가요?
A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·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, 가능한 급여·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.
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!
소득 지원
•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
•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
▸ 만 30세 미만 :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
▸ 만 24세 이하 : 근로소득공제 확대
* (기존)40만원+추가30% → (변경)50만원+추가30%
주거 지원
•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실시 (240호)
▸ 원룸형 주거지원(임대료 무료, 관리비만 부담)
▸ 자립 정보,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
* 2019년에는 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충남, 전북, 전남 7개 시도가 참여
문 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개별 읍·면·동 주민센터
홈페이지 | http://jarip.or.kr
2019년 보호종료아동
자립수당& 주거지원 통합서비스
지금 신청하세요!
보건복지부
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

□ 홍보 책자 (속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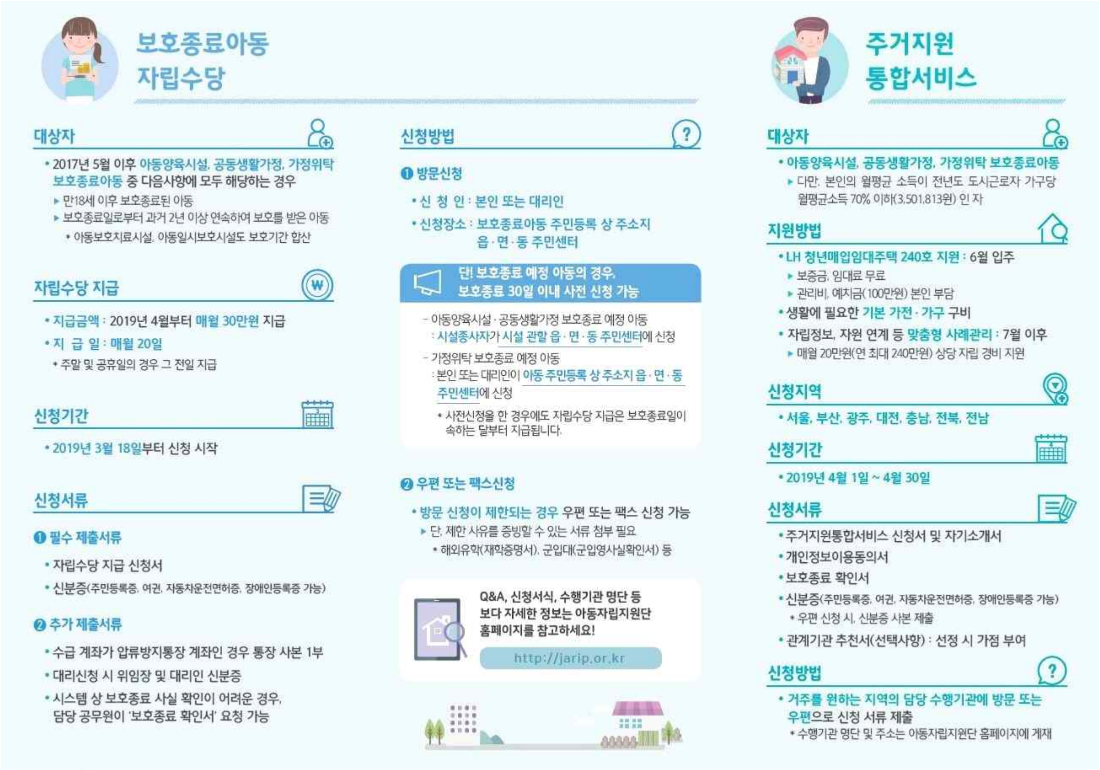
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
대상자

-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  - ▸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  - ▸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
    - * 아동보호치료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

자립수당 지급

- 지급금액 :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
- 지 급 일 : 매월 20일
  - *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

신청기간

-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

신청서류

❶ 필수 제출서류

-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가능)

❷ 추가 제출서류

-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
-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-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, 담당 공무원이 '보호종료 확인서' 요청 가능

신청방법

❶ 방문신청

- 신 청 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- 신청장소 :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단!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,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

- 아동양육시설·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
  :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-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
 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  - *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.

❷ 우편 또는 팩스신청

-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
  - ▸ 단,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
    - * 해외유학(재학증명서), 군입대(군입영사실확인서) 등

Q&A, 신청서식, 수행기관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!
http://jarip.or.kr

주거지원 통합서비스

대상자

-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  - ▸ 다만,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(3,501,813원) 인 자

지원방법

-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40호 지원 : 6월 입주
  - ▸ 보증금, 임대료 무료
  - ▸ 관리비, 예치금(100만원) 본인 부담
-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·가구 구비
- 자립정보,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 : 7월 이후
  - ▸ 매월 20만원(연 최대 240만원) 상당 자립 경비 지원

신청지역

- 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충남, 전북, 전남

신청기간

- 2019년 4월 1일 ~ 4월 30일

신청서류

-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
- 개인정보이용동의서
- 보호종료 확인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가능)
  - * 우편 신청 시, 신분증 사본 제출
- 관계기관 추천서(선택사항) : 선정 시 가점 부여

신청방법

-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
  - *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